

효성첨단소재(주)
제보하기 프로세스

목 차

목적	-----	03
적용 범위	-----	03
제보 내용	-----	03~04
제보 절차	-----	04~05
제보자 보호 원칙	-----	05

1. 목적

- 1) 효성첨단소재는 임직원 뿐 아니라 고객사, 협력사, 지역 사회 등 이해관계자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제보 채널의 운영을 통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,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부정한 침해를 근절하며,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하고자 함.
- 2) 본 프로세스의 목적은 비윤리적이거나 부적절한 관행 (법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사내 규정 위반, 잠재적인 사기, 부패 또는 심각한 불법 행위 및 부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)을 목격한 회사 직원이 상급자에게 알리지 않고 신원 공개 없이 "제보하기" 를 통해 이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임. 단, 내부 제보자의 신원이 제공된 경우에 내부 제보자는 효성첨단소재 윤리강령, 윤리강령 실천 지침, 인권 방침 및 원칙에 기반하여 해당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함.
- 3) 이 프로세스는 부적절한 활동에 대한 보고 및 조사 (효성첨단소재 감사 규정)에 적용됨. 상황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시점과 관련 법률 및 당사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사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.
- 4) 본 프로세스에 따른 부적절한 활동에 대한 보고 및 조사 과정에서 감사 규정 또는 개인 정보보호 운영 기준에 명시된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으며, 개인 데이터가 처리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 기준에 따라 처리됨.

2. 적용 범위

- 1) 효성첨단소재(주) 임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등 직원은 아니지만 회사를 대신하는 회사나 사람(예. 하도급업체)에게 적용

3. 제보 내용

- 1) 아래 내용을 포함, 임직원의 규정 위반 행위, 금지 행위, 불법 행위 등 신고 및 제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보
 - 1)-1. 윤리강령 및 법규 위반
 - 1)-2. 반부패 및 금품, 향응 요구 및 수수
 - 1)-3. 거래 불만사항 및 공정거래 위반
 - 1)-4. 직장 내 괴롭힘

- 1)-5. 임직원 고충 사항
- 1)-6. 아동/강제노동 및 인권 침해
- 1)-7. 협력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
- 1)-8. 협력사 고충 사항
- 1)-9. 회사 자산의 불법, 부당 사용
- 1)-10. 문서, 계수의 조작 및 부정적 보고
- 1)-11. 정보보안 침해
- 1)-12. 기타 위법 및 부당행위 사항

4. 제보 절차

1) 제보자는 아래 언급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음.

1)-1. 효성첨단소재㈜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할 수 있음.

http://www.hyosungadvancedmaterials.com/kr/others/report_index.do

1)-2. E-mail 을 통해 제보할 수 있음. audit@hyosung.com

1)-3. 제보 조치내용 확인에 대한 불만 사항은 E-mail 으로 보낼 수 있음.

hyosung_hr@hyosung.com

- 2) 제보 시 담당자의 이메일로 등록 안내 메일이 발송되고, 동시에 제보 등록 완료 메일이 제보자에게 발송됨.
- 3) 심사 필요성을 판단 후, 필요성이 없을 경우 근거를 조치 내역에 등록하며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을 등록함.
- 4) 제보 담당 부서에서 직접 제보 내용을 객관적인 근거 확보 및 조사하고, 비리 확인 및 점검함. 단, 심사과정 중 피험자는 조사, 증거를 보류, 파괴 또는 변조해서는 안되며 증인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지도하거나 협박하지 않음. 그러한 행위는 징계 절차의 책임이 있음.
- 5) 심사 책임자는 보호 공개를 받은 후 증거와 함께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보 담당 부서에 제출, 보고, 배포함.
- 6) 배포 후 개선 대책서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가 확정되었거나 필요에 따라 법적 조치를

진행 후 종결 처리 함.

- 7) 제보자가 실명으로 제보하고 결과 피드백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, 회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치 처리 결과를 제보자에게 발송함. 익명 제보자의 경우, 제보 센터 내 '익명 제보 확인하기' 를 통해서 조치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.

5. 제보자 보호 원칙

- 1) 효성첨단소재는 윤리강령, 윤리강령 실천 지침, 인권 방침 및 원칙에 기반하여 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.
- 2)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보자에 대한 비밀보장, 불이익 조치 금지, 책임의 감면 등을 통하여 제보자를 보호함.
- 3) 제보자 본인의 동의 없이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며,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제보 정보도 철저히 보호함.
- 4)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의 진술,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분도 동일하게 보호하고 지원함.
- 5) 제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, 제보자 및 관련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함.
- 6) 위법 및 비윤리 행위에 가담했으나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 시,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음.
- 7) (추가로)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적용해야 함. 징계위원회는 특정 경우에 적절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필요한 개인 정보만 (추가로) 처리해야함.
- 8) 징계위원회는 각 사례의 결과는 내부심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존 기간이 준수되도록 할 것임.
- 9) 징계위원회는 접근 권한 요구에 응할 때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.
- 10) 개인정보는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폐기 전까지 기밀이 철저히 보호되고 규정에 따라 복구 불가능하도록 폐기됨.